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황인구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90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1일

발 의 자 : 황인구 의원(1명)

찬 성 자 : 장상기·전병주·문장길

추승우·김태호·이은주

최 선·양민규·이승미

송아량·임만균·권순선

채유미·김상진·송명화

김경영·김생환·유 용

정진술·송재혁·문영민

임종국·김정환·김 경 의원 (24명)

1. 제안이유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학교체육시설 구축, 학생 체육활동 보장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체육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생 기초체력 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학교체육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학교체육 내실화, 체육시설 확보, 여학생·장애학생 체육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와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9조)

사.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체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20조)

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21조)

자. 학교체육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화 등을 위한 사업의 위탁,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제23조)

차. 서울특별시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체육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과 학교, 학생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체육교육과정 내실화와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기자재 및 용품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및 인력 확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보장, 학생의 체육교육과정 참여도 제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체육 시설 및 기자재, 체육활동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학교체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② 학교체육 활성화와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세우는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목적 및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해 수립되는 기본 시책 및 기본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 용품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세우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체육 내실화) ① 학교장은 체육교육과정의 수업시수 확보, 성별과 학생·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체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체육 교육 컨설팅, 체육 우수지도 사례 연구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기술을 활용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확보)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체육장 면적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 사정 및 공간 등의 문제로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학교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율체육 기반 조성) ①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및 운영에 있어 성별과 학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학생 체육활동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체육대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① 학교장은 매년 성별에 따른 체육프로그램의 구성·운영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체육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체육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능)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및 각종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체육시설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열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다.

1. 교육감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 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체육건강 문화예술과장은 초등교육지원과장 또는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본다.

제20조(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교육의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각종 대회 운영, 학생선수 지원, 연수 운영, 자료 개발, 평가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제21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및 기자재·용품 등의 확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여학생 체육활동 지원 등을 통한 서울특별시 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체육 관련 전문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25조(표창) 교육감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
(교원) 또는 학생, 학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 제10조(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제20조(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 단, 같은 조례안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학교체육 내실화), 제7조(학교 체육시설 확보), 제8조(자율체육 기반 조성), 제9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제11조~제19조, 제22조(사업의 위탁), 제23조(재정지원 등), 제24조(협력체계의 구축)는 상위법인 「학교체육진흥법」의 내용을 조례안이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 아울러 같은 조례안 제21조(연구학교 지정·운영)는 서울시교육청이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선도학교 운영’ 및 ‘7560+운동선도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 기 추진하고 있음(붙임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10조(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제20조(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표창) 해당](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241,298천원(연평균 248,26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241,298천원으로 연평균 248,2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10조(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는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 세부사업 ‘순회교육 운영’ 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
 - 제20조(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등)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학교체육진흥지원

- 센터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준용하여 추계
- ※ 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설치비는 1차년도만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241,298천원(연평균 248,260천원)
 - 총비용 =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비용 + 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운영비
 - = 620,750천원 + 620,54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비용 (제10조)	124,150	124,150	124,150	124,150	124,150	124,150	620,750
	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운영 비용 (제20조)	210,000	102,637	102,637	102,637	102,637	102,637	620,548
	소계(b)	334,150	226,787	226,787	226,787	226,787	226,787	1,241,298
	총비용(b-a)	334,150	226,787	226,787	226,787	226,787	226,787	1,241,298

- 장애학생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비용 ≙ 620,75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특수체육인력비용)_i
 -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연간 특수체육 전담 인력 배치 비용 ≙ 124,150천원
 - 특수체육 전담 인력 배치 비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의 세부사업 ‘순회교육 운영’ 사업비를 준용
 - 2020년 ‘순회교육 운영’ 예산
 -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 내용 : 순회교육 운영비 지원, 순회교육 담당 순회특수교사 출장여비 등 지원

- 소요예산 : 124,150원

· 운영비			5,500	천원
- 순회교육 운영	500,000원×11청	=	5,500	천원
· 여비			118,650	천원
- 순회교육 담당자 출장비	10,000원×105일×113명	=	118,65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운영비 ≙ 620,548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학교체육진흥센터설치운영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

- 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운영비(1차년도 발생) ≙ 210,000천원

· 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비는 울산 학교진흥지원센터 설치·운영비(2016년) 준용

※ 울산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과 유선으로 2016년 당시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 1000만원설립 운영비가 소요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관련기사를 [붙임2]으로 첨부함(당시 사업 예산 및 내용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공식 문서는 제공이 불가하여 관련 기사로 갈음함)

- 연간 학교체육진흥센터 운영비(2차년도 ~ 5차년도) ≙ 102,637천원

· 학교체육진흥센터 운영비는 울산 학교진흥지원센터 운영비(2020년) 준용

※ 울산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운영비는 [붙임2] 참고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

【붙임1】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사업내용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3p, 66p, pp.83-89 참고		
제8조(자율체육 기반 조성) 및 제22조(재정지원 등)	수영교육활성화	880,177	· 수상안전 의식 교육 확대로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고취 · 교원의 생존수영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법 연수 실시
	학교체육교육활성화	1,660,000	· 단위학교 특색 있는 자율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혁신 미래 학교 학교체육 활성화 선도학교 모델 육성 ·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초 체력 향상 및 맞춤형 전문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질과 적성 계발
	선진운동부육성	1,470,600	· 꿈과 재능이 있는 학생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예산 필요 ·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설비지원의 확대와 방학 중 훈련비 지원이 필요함 · 학생선수 인권, 진로교육 및 지도자 연수를 통한 선진운동부 정착 지원 · 선진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지속적 지원 필요
	중등스포츠강사지원사업	10,037,240	· 중학교교육과정내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확대를 위한 강사비 지원 · 외부시설이용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체육활동 공간 제공 · 각종 체육활동 간 필요한 교구비 지원을 통한 다양한 활동 지원
	초등스포츠강사연수비지원	86,414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활성화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사업내용
			<p>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내 체육수업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역량강화 연수비 지원 ·인성교육 중심의 체육교과 협력학습 지도를 통한 체육교육의 질적 제고
제9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학교스포츠클럽운영 (여학생체육활성화운영비)	168,000	·체육소의 학생 및 여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및 여학생 신체활동 강화
제11조(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기능)~제19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지역위원회)	체육관리 (학교체육진흥위원회운영)	1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 - 기간 : 2020. 1. ~ 12. - 대상 : 학교체육진흥위원(외부, 내부) - 내용 : 2020년 학교체육업무 및 학교체육활성화 자문 -학교체육진흥위원회운영(본청) 소요예산 : 1,600천원 -학교체육진흥위원회운영(교육지원청) 소요예산 : 15,400천원
제23조(협력체계의 구축)	학교스포츠클럽운영 (지역학교스포츠클럽리그지원)	278,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교현장의 행복한 스포츠문화 조성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별 분산개최를 통한 꿈과 끼를 키우는 스포츠 환경 조성

자료 :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사업내용
제20조(연구학교 지정·운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선도학교 운영)	120,000	- 대상 : 서울 초·중·고 24교 - 내용 : ·단위학교 특색 있는 자 율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혁신 미래 학교 학교체육 활성화 선도학교 모델 육성 ·체육소외 학생 및 여학 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행복한 학 교문화 조성 및 여학생 신체활동 강화 - 소요예산 : 120,000천원
	학교체육교육활성화 (7560+운동선도학교 지원)	200,000	- 대상 : 초 · 중 · 고 39교 - 내용 : · 단위학교 특색 있는 자 율체육활동 프로그램 운 영을 통한 혁신 미래학 교 학교체육 활성화 선 도학교 모델 육성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으로 기초 체력 향상 및 맞춤형 전문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질과 적성 계발 - 소요예산 : 200,000천원

자료: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참고 6. 안전교육 참고자료(제3조제5항)

학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참고 자료

- 홈페이지 주소: 학교안전정보센터
- 주요내용 :
 -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편성 모델 및 프로그램
 - 교직원 안전교육 표준연수 모델 및 교재
 - 학교급별·학년별·안전영역별 안전교육자료
 - 안전교육 연구학교, 교직원 안전동아리 자료 및 프로그램
 - 안전교육 실천 우수사례
 - 타 기관 안전체험시설 정보 및 안전교육자료 등
-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료 : 「2020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135p

참고 2. 학교체육 자체 평가서(제5조)

1. 학교현황

학교명		학교장 성명	
학급수		학생수	
체육장 면적	가)	실내체육관 면적	나)

2. 자체평가 항목 및 배점

영역	관점	평정척도			평가
		5점	3점	1점	
가. 체육교육과정 편성 운영	①학교 실정에 맞는 연간, 월간, 주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연간, 월간, 주간 계획수립, 실시	연간, 월간 계획수립, 실시	연간계획 수립, 실시	
	②학년별, 종목별, 내용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양성과 창의성 있는 교수·학습 실시	다양한 교수 - 학습 실시	다양성과 창의성 미흡	
	③-1 초, 중학교 : 다양한 수업기자재 및 수업자료를 제작 또는 활용하는가?	다양하게 제작, 활용	보통	미실시	
	③-2 고등학교 : 체육교과 학기별 선택 현황	6학기 이상 운영	5학기	4학기 이하	
	④체육평가 내용 및 기준 학교 홈페이지 탑재 여부	탑재 완료	부분 탑재	탑재 안 함	
나. 건강체력 육성	⑤서울학생 신체활동7560+운동 실시여부	적극 실시	실시	미실시	
	⑥스포츠클럽리그 개최	전교생 대상 연2회 실시	전교생 대상 연1회 실시	미실시	
	⑦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정도	50% 이상	49~40%	39% 미만	
	⑧건강체력교실 운영	4~5등급 대상 전체 운영	부분 운영	미운영	
다. 체육교사 전문성 제고	⑨체육교사 교내 공개수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가? (계획된 수업공개에 한 함)	체육교사 전원 실시	1-2명 실시	미실시	
	⑩각종 체육연수(연구) 참여도는 높은가?	체육교사 전원 1회 이상	체육교사 50% 이상 1회 참여	체육교사 50% 미만 1회 참여	
	⑪체육교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연간 6회 이상 실시	연간 4-5회 실시	연간 3회 이하 실시	
라. 학교체육환경 개선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	⑫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 있는 체육수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특색 있는 수업 실시	연계 실시	미실시	
	⑬교수·학습에 필요한 체육시설 및 교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기준량 90% 이상 확보	기준량 60~89% 확보	기준량 60% 미만 확보	
	⑭유휴공간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가?	실적이 있거나 노력함	.	없음	
마. 새로운 체육문화 창조	⑮교내·외 체육대회(육상대회) 등 체육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전교생 대상 연2회 이상 실시	전교생 대상 연1회 실시	미실시	
	⑯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되고 있는가?	5개 이상 활동	3개 활동	3개 이하	
	⑰방과 후 학교 체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3개 이상 프로그램 실시	1~2개 프로그램 실시	미실시	
	⑱교 1운동부(체육특기학교)를 육성하고 있는가?	육성	.	미육성	
	⑲방학 중 스포츠교실을 개설하였는가?	연2회 이상	연1회	미실시	
	⑳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마련되어 있음	.	마련되어 있지 않음	
총점(100점 만점)					

자료 : 「2020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110p

□ 제6조(학교체육 내실화) 관련사항

I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체육교육과정 운영〉

□ 체육과 교육과정 내실 운영

- (교육과정 운영) 체육과 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운영이 다르지 않도록 수업 운영
* 초등(3~6학년): 주당 3시간, 중학교: 272시간, 고등학교: 10단위 이상·6학기 편성
- (중학교 체육수업 확보)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2시간 운영 학년은 학교장 재량으로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대체 가능
-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모든 고등학교(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등)는 교육과정에서 체육 10단위 이상, 6개 학기 편성·운영 필수
※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에 적용을 받는 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나, 가능한 10단위 이상, 6학기 편성 권장
※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8단위 이상이나, 가능한 10단위 이상 편성 권장
- (우수사례 발굴 확산) 창의·혁신적인 방법으로 학생의 조화로운 인성 함양에 기여한 체육수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에듀넷(초등, 중등 체육수업 콘텐츠 수록), 학교체육 관련 연구회(유튜브 영상 포함), 대한민국 체육교사 축전 등을 활용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 편성) 학교 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학교 운영비의 3% 이상 예산 편성 권장
 -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및 대회 출전 경비,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확보 등
 -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교류활동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 수당
 -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은 별도 편성 지원 *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 중학교 자유학년(학기제) 체육 영역 내실 운영

- 교과를 조정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는 경우 특정교과(군)에서 활용 가능한 학기당(학년당) 시수 제한 삭제
 -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군)별 기준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기본 방향만 유지, 특정교과(군)내 34시간 이내로 조정가능한 시수를 제한하는 사항삭제
※ 다만, 교과(군)별 시수를 조정하여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할 경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해당교과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이수가 가능하도록 함에 유의
※ 특정교과에서 과도하게 시수를 조정하여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운영하지 않도록 유의
- 학교에서 자유학기 체육활동 편성을 위해 한 학기에 체육교과와 학교스포츠클럽을 편성하는 시수는 자율적으로 결정
 - 체육교과와 학교스포츠 클럽을 동시에 자유학기 활동으로 조정 가능한 시수의 제한은 두지 않고 학교에서 자율결정
 - 다만, 학교스포츠클럽은 자유학기 활동으로 조정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기당 또는 학년 당 전체 시수* 범위 내에서 조정
* (자유학기) 51시간 이내, (자유학년) 85시간 이내

○ 자유학기 활동 편성·운영

자유학기, 자유학년, 연계학기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방향(공통사항)

- ❖ 자유학기 활동으로 인한 교과(군)별 조정가능 시수는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군)별 시간 배당(3년간 총 기준 수업 시수)의 20%범위에서만 활용 가능함
 - ※ 다만, 특정교과를 과도하게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하여 해당 교과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이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특정교과에 편중한 자유학기활동 편성 지양)
- ❖ 예술·체육 교과(군)를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으로만 편성 가능
 - ※ 시수를 조정한 교과(군)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운영
- ❖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의 체육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수 있음

자료 : 「2020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pp. 3-50

□ 제7조(학교 체육시설 확보) 관련사항

「2020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발췌

라. 시설 활용

1) 학교 유휴 공간 활용

- 학교의 유휴교실 및 체육활동 이용 가능 공간(옥상, 테라스, 대피처, 창고 등) 등을 활용

※ 단, 교육활동 장소 선정 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2) 인근체육시설 연계

가) 인근의 체육시설·공원 등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 이용 확대

나) 지역 체육시설 이용 시 시설사용료 교육청에서 지원

자료 : 「2020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36p

□ 제24조(표창) 관련사항

「2020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발췌

II -5. 체육활동 우수학교 및 유공자 표창

1. 목적 :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 및 체육교사의 사기 진작

2. 대상

가. 체육 교육과정 운영 우수교, 체육수업 공개 교사 중 우수교사

나. 체육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체육관련 연수 및 연구대회 참여 실적이 많은 학교 및 교사

다. 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학교 및 교사

라. 방과 후 체육활동,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우수교 및 우수 활동 교사

- 마.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운동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학교 및 교사
- 바.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학생선수 지도 및 학생 지원 업무 헌신도
- 사. 학교체육 환경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한 학교 및 교사
- 아.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공무원, 지역사회 인사

3. 종류

가. 교육감 표창

- 1) 서울시특별시교육청 계획에 의거 표창 추천(세부계획은 별도 통보)
- 2) 학교체육 우수학교 표창, 학교체육 유공자 표창

대상	추천기준
초·중·고 - 우수학교 - 유공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수업의 질 제고에 적극 노력한 학교 및 교원 · 건강체력 증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학교 및 교원 · 선진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학교 및 교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서울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및 유공 교원 · 전국체육대회(동계체전 포함)에 입상한 학교 및 유공교원

나. 학교체육활성화 교육부장관 표창

- 1) 교육부 계획에 의거 표창 추천(세부계획은 별도 안내)
- 2) 학교체육 우수학교 표창, 학교체육 유공자 표창

자료: 「2020학년도 학교체육 업무 매뉴얼」 60p

【붙임2】 울산 학교체육진흥센터 설치·운영비

[울산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설치비]



인쇄하기

닫기

울산 학교 진흥지원센터 설립... '학교 체육 활성화'

2016-08-04 11:31 | 울산CBS 반응규 기자

울산지역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울산 학교 체육 진흥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스포츠과학교등학교 내에 '울산 학교 체육 진흥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 체육 진흥지원센터는 학교 체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쓴다.

또 체육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와 학교 운동부 육성 시스템 선진화에도 적극 나선다.

시교육청은 앞서 교육부와 협의해 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2억 1000만 원을 비롯해 장학사 1명과 행정인력 1명을 확보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4633127>

[울산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운영비]

3. 울산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운영				102,637		102,637
가. 센터관리요원인건비				28,024		28,024
1) 기본급	1100301	팝업입력	1,601,090원×1명×12월=	19,214	1,601,090원×1명×12월=	19,214
2) 교통보조비	1100301	팝업입력	60,000원×1명×12월=	720	60,000원×1명×12월=	720
3) 정액급식비	1100301	팝업입력	60,000원×1명×12월=	960	60,000원×1명×12월=	960
4) 명절휴가보전금	1100301	팝업입력	350,000원×1명×2회=	700	350,000원×1명×2회=	700
5) 연차휴가수당	1100301	팝업입력	58,960원×1명×12월=	708	58,960원×1명×12월=	708
6) 연장근로수당	1100301	팝업입력	10,720원×1명×10시간×12월=	1,287	10,720원×1명×10시간×12월=	1,287
7) 법정부담금				2,558		2,558
가) 국민연금	3200501	팝업입력	25,140,000원×4.50%=	1,132	25,140,000원×4.50%=	1,132
나) 건강보험	3200502	팝업입력	25,140,000원×3.06%=	770	25,140,000원×3.06%=	770
다) 산재보험	3200503	팝업입력	25,140,000원×0.90%=	227	25,140,000원×0.90%=	227
라) 고용보험	3200504	팝업입력	25,140,000원×1.50%=	378	25,140,000원×1.50%=	378
마) 노인장기요양보험	3200507	팝업입력	25,140,000원×3.06%×6.55%=	51	25,140,000원×3.06%×6.55%=	51
8) 퇴직금	3200505	팝업입력	1,877,000원×1명=	1,877	1,877,000원×1명=	1,877
나. 센터운영				31,294		31,294
1) 사무용품	2100101	팝업입력	300,000원×4식=	1,200	300,000원×4식=	1,200
2) 자료인쇄	2100103	팝업입력	5,000원×600권=	3,000	5,000원×600권=	3,000
3) 제세공과금	2100219	팝업입력	100,000원×12월=	1,200	100,000원×12월=	1,200
4) 자문위원수당				5,000		5,000
가) 기본	2100607	팝업입력	70,000원×25명×2회=	3,500	70,000원×25명×2회=	3,500
나) 초과	2100607	팝업입력	30,000원×25명×2회=	1,500	30,000원×25명×2회=	1,500
5) 보고서편집위원수당				2,500		2,500
가) 기본	2100607	팝업입력	30,000원×5명×10회=	1,500	30,000원×5명×10회=	1,500
나) 초과	2100607	팝업입력	20,000원×5명×10회=	1,000	20,000원×5명×10회=	1,000
6) 전문체력측정위원수당				4,500		4,500
가) 기본	2100607	팝업입력	30,000원×3명×30회=	2,700	30,000원×3명×30회=	2,700
나) 초과	2100607	팝업입력	20,000원×3명×30회=	1,800	20,000원×3명×30회=	1,800
7) 출장여비				3,600		3,600
가) 관내	2200101	팝업입력	20,000원×3명×35회=	2,100	20,000원×3명×35회=	2,100
나) 관외	2200101	팝업입력	100,000원×3명×5회=	1,500	100,000원×3명×5회=	1,500
8) 업무협의회	2300203	팝업입력	20,000원×30명×5회=	3,000	20,000원×30명×5회=	3,000
9) 성과보고회				3,294		3,294
가) 보고서인쇄	2100103	팝업입력	5,000원×300부=	1,500	5,000원×300부=	1,500
나) 원고료	2100108	팝업입력	14,000원×3,5매×3시간×2명=	294	14,000원×3,5매×3시간×2명=	294
다) 보고회물품	2100126	팝업입력	300,000원×1식=	300	300,000원×1식=	300
라) 특별강사수당				1,000		1,000
(1) 기본	2100605	팝업입력	200,000원×2명=	400	200,000원×2명=	400
(2) 초과	2100605	팝업입력	150,000원×2명×2시간=	600	150,000원×2명×2시간=	600
마) 업무협의회	2300201	팝업입력	10,000원×20명=	200	10,000원×20명=	200
10) 홈페이지유지보수	2100111	팝업입력	4,000,000원×1식=	4,000	4,000,000원×1식=	4,000
다. 학교체육활성화연구용역	2600101	팝업입력	20,000,000원×1식=	20,000	20,000,000원×1식=	20,000
라. 사무용집기	4300109	팝업입력	500,000원×15종=	7,500	500,000원×15종=	7,500
마. 학교운동부관리시스템개발용역[특교잔액]	2101312	팝업입력	[1차 추경]15,819,000원×1식=	15,819	15,819,000원×1식=	15,819